제6편 위원회 6-1-4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 규정

1997, 09, 01, 최초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10. 02. 01. 전면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1. 01 .01. 부분개정

2025. 01. 01.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의2제1항에 의거 대전보건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교원인사 담당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원인사위원회와 위원 간 중복 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구성하여 임명한다.<개정 2016.04.01.. 2025.01.01.>

- ②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04.01., 2025.01.01.>
- ③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인사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04.01.>

⑤ 위원

제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 ③정년보장 임용결정을 위한 의결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④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 ⑤제4항에 의한 재적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 수는 그 재적위원 수를 감한 수로 한다.
- ⑥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정년보장 대상 교원 임용여부 심의는 인사관리규정의 최소조건을 충족하는 교원 중에서 교원성과평가 평정결과로 심사한다.<개정 2021.01.01.>

- 1. <삭제> 2021.01.01.
- 2. <삭제> 2021.01.01.
- 3. <삭제> 2021.01.01.
- 4. <삭제> 2021.01.01.

제6편 위원회 6-1-4

5. <삭제> 2021.01.01.

제6조(연구실적물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는 학내외에서 상위직 전공분야 교수 3인으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다. 단, 전공분야 및 상위직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은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원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재직 중인 자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각기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